

[] 완성
[] 정기 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----

※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:		
	대표자:		생년월일:
	사무소 소재지:		전화번호:
	전자우편주소:		
	사업자등록번호:		

※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세부 내용	사업소 소재지:		
	사업 등의 종류:	허가번호:	허가 연월일:
	검사 희망 연월일: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6조제2항, 같은 조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(집단공급시설·저장시설·판매시설·영업소시설)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·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	수수료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------	---	--

처 리 절 차

